

제 2023 - 3호

## 과태료부과통지서

시행일 2023. 1. 9.(화)

수신 박 O 숙 귀하

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17조(과태료의 부과)에 따라 우리 기관의 처분 내용을 아래와 같이 통지하니 **불복하실 경우 서면으로 의견제출**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예정된 처분의 제 목	「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」(이하「연안사고예방법」)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						
2. 당사자 인적사항	성 명	박 O 숙(83년생)					
	주 소	인천광역시 연수구, 미추홀구 소재(주소불명)					
3.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 실	박O숙은 2023. 9. 5.(화) 01:27경 하나개해수욕장 갯벌 일부 출입통제구역 지점인 37-22.28N, 126-24.09E 해점에서 해양경찰관으로부터 단속되어 과태료 부과 처분하고자 함						
4. 처분하고자 하는 내 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처분내용: <b>과태료 200,000원(금이십만원)</b></li> <li>부과기준: 1차: 20만원, 2차: 50만원, 3차: 100만원</li> </ul>						
5. 법 적 근 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「연안사고예방법」 제10조(출입통제 등), 동법 제25조(과태료)</li> <li>인천해양경찰서 공고 제2021-22호(하나개해수욕장 갯벌 일부 출입통제구역 지정 알람)</li> <li>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4조(과태료의 산정), 제17조(과태료 부과), 제20조(이의제기)</li> </ul>						
6. 이 의 제 기 한 제 출 기 한	제 출 처	기 관 명	인천해양경찰서	부서명	해양안전과 안전관리계	담당자	경 장 윤혜성
		주 소	인천광역시 연수구 옥골로69 인천해양경찰서		전화 번호	032) 650-2348	
		전자우편	kcg23187@korea.kr		팩스	032) 650-2948	
	제출기한	<b>2024년 2월 26일 까지</b>					

인 천 해 양 경 찰 서



## 〈과태료 부과처분에 따른 유의사항〉

1. 귀하께서 앞쪽의 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납부하실 경우 [과태료 납입고지서]에 있는 정보를 참고하여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. 귀하께서 우리 기관의 행정처분(과태료부과)에 대한 이의제기를 신청하는 경우 **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** [이의제기서] 양식을 참고하여 **반드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**하고, 이의제기 의견 도달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- \* 제출기한 내에 이의제기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“의견없음”으로 간주
3. 귀하께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  -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(상세내용 아래참고)
  -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52조에 관허사업 제한
    - \* 우리 기관에서 주관하는 사업의 허가인가면허·등록 및 갱신 등과 관련된 사업의 정지 또는 사업의 허가 등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  -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
    - \* 「국세징수법」 제110조(체납자료의 제공)과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5조(신용정보집중기관)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에 대한 자료를 제공 할 수 있습니다.
  -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54조(고액·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)에 따른 감치
    - \* 감치: 법정의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을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둠(30일 이내)
4. 납부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4조(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) 따른 가산금(체납금액의 100분의 3)이 징수되며, 이후에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**증가산금(체납된 과태료의 1,000분의 12)**이 가산되어 징수됩니다.
  - \* 다만, 증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않습니다.
5. 귀하께서 기한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**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를 할 예정**입니다.
6.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4조의3(과태료의 징수유예 등)에 해당 되신다면 **과태료의 분할납부나 납부기일의 연기**를 할 수 있으니, 귀하께서는 **상기 내용에 해당되신다면** 관련서류를 우리 기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7.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인천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(안전관리계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(전화: 032-650-2348, 담당자 경장 윤혜성)